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74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이용우 · 정준호 · 민병덕
김기표 · 박 정 · 김태선
신장식 · 박홍배 · 김남근
이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형태의 임시 기숙사에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취약한 주거 환경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 제22조의2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시설의 관리·운영 및 보전에 관한 기준일 뿐,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및 주거 기능 확보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없어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가설건축물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한 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을 원천 금지하며, 또한 직업안정

기관에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전 및 건강권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요인을 근절하고자 함.

더불어,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기숙사의 제공 등)”을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를 “「근로기준법」 제100조,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및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u>기숙사의 제공 등</u>)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u>기숙사</u>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u>근로기준법</u> 」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u>주거시설의 제공 등</u>) ① ----- <u>주거시설을</u> ----- 「 <u>근로기준법</u> 」 제100조, 「 <u>건축법</u> 」 제20조, 「 <u>농지법</u> 」 제34조 및 <u>대통령령으로</u> -----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u>기숙사</u> 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u>제공하여야 한다</u> .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u>주거시설을</u> ----- ----- ----- ----- <u>제공하고, 이를</u> <u>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 -----.
1. <u>기숙사</u> 의 구조와 설비	1. <u>주거시설</u> -----
2. <u>기숙사</u> 의 설치 장소	2. <u>주거시설</u> -----
3. <u>기숙사</u> 의 주거 환경	3. <u>주거시설</u> -----
4. <u>기숙사</u> 의 면적	4. <u>주거시설</u> ---
5. 그 밖에 <u>기숙사</u>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 <u>주거시설</u> ----- -----
③ 제2항에 따른 <u>기숙사</u>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u>주거시설</u> ----- ----- -----.

<신 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략)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주거시설 -----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